



# 직무발명보상금 과세제도 현황 및 시사점

세제분석1과 강민지 분석관

## 직무발명보상의 의의

- 인공지능(AI)·로봇 기술 등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최근 환경에서 연구개발 성과 및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연구자 등 종업원에 대한 보상 체계로 활용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과세 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우리나라 특허 출원인의 대부분이 법인(2024년 86.9%)으로, 법인에 소속된 근로자의 직무발명은 기술발전 및 산업경쟁력 제고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

- 「발명진흥법」에 따르면, 직무발명은 종업원 등이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따라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의미하며, 종업원 등은 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직무발명보상금)를 가짐

-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짐

## 직무발명보상금 과세제도 개요 및 현황

- 현행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과세 방식은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근로기간 중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퇴직 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되, 두 경우 모두 연 7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 근로기간 중 지급 시 근로소득(종합소득)으로 구분하여 종합소득세(6~45%)를 부과하고, 퇴직 후 지급 시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기타소득세(20%)를 부과

[표 1]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과세제도 현황, 2026년 기준

지급 시기	소득구분	과세방식
근로기간 중	근로소득으로 구분	· 연 700만원 이하: 비과세 · 연 700만원 초과: 종합소득세(6~45%) 과세
퇴직 후	기타소득으로 구분	· 연 700만원 이하: 비과세 · 연 700만원 초과: 기타소득세(20%) 선택적 분리과세 <sup>1)</sup> , 필요경비율 0%

주: 1)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할 것인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것인지 선택 가능(3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국세청의 2024년 기준 소득세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 소득으로 신고한 경우는 총 1,566명이며 이들의 1인당 연간 직무발명보상금(연간 비과세 한도액 700만원 초과분)은 평균 2,046만원,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는 783명이며, 이들의 1인당 연간 직무발명보상금은 평균 1,734만원으로 나타남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분 포함시,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는 57,811명이며 이들의 1인당 연간 직무발명보상금(비과세액 포함)은 평균 165만원으로 나타남

[표 2] 직무발명보상금 신고현황, 2024년 기준

(단위: 명, 백만원)

	근로소득 구분			기타소득 구분		
	인원 (A)	직무발명보상금 (B)	1인당 보상금 (C=B/A)	인원 (D)	직무발명보상금 (E)	1인당 보상금 (F=E/D)
비과세액 제외 <sup>1)</sup>	1,566	32,037	20.46	783	13,630	17.34
비과세액 포함	57,811	95,453	1.65	n.a.	n.a.	n.a.

주: 1) 1인당 연간 비과세한도 700만원을 초과하여 신고한 자 기준

자료: 국세청, 「2024 국세통계연보」, 2024.12. 국세청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직무발명보상금 과세제도 연혁

- 직무발명보상금은 1980년부터 비과세 대상 기타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0년대 부터 동 보상금의 소득 구분 변경 및 비과세 범위 확대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

[표 3] 직무발명보상금 과세제도 연혁

시기	주요 변경사항
1980	· 「소득세법」에 직무발명보상금을 비과세 대상 기타소득으로 규정 (종업원 연구의욕 고취 및 기업 생산성 제고 목적)
2012.6.	· 2011년 감사원의 지적*으로 과세관청이 직무발명 실시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함에 따라, 납세자와 과세 관청 간의 과세 분쟁 개시 (조심2012전1728) *감사원은 직무발명 실시보상금에 대해 계속적, 반복적 지급이 이루어지므로 근로제공 대가로 판단하고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도록 지적
2015.4.	· 대법원은 실시보상금의 지급 방법이 규칙적, 반복적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근로소득이라고 볼 수 없고 기타소득으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2014두15559) (보상금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대가로 판단)
2017	소득세법 개정(2016.12) ·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 시기에 따라, 근로기간 중 지급분은 근로소득으로, 퇴직 후 지급분은 기타소득으로 간주 · 연 300만원 이하의 보상금만 비과세소득으로 인정
2019	소득세법 개정(2018.12) ·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받는 보상금도 비과세 대상 포함 · 비과세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연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
2024	소득세법 개정(2023.12.) · 특수관계인 등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와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법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법인의 지배 주주 등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 비과세 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연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자료: 특허청, 2019년 지식재산 세제 개선 추진계획, 2019.2. 각 연도 개정세법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주요국의 직무발명보상금 과세제도

- 미국은 직무발명보상금을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되, 예외적으로 근로 소득으로 구분하고, 일본은 직무발명보상금을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되,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으로 구분함<sup>1)</sup>
  - (미국) 직무발명보상금 과세시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자본이득)이라는 관점에서 과세하되, 해당 종업원이 발명 자체를 목적으로 채용된 경우로 해석되는 경우에만 동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취급
  - (일본) 종업원의 발명 등에 대한 보수를 특허권 승계 후에 지급한 경우 및 예약 승계의 경우 잡소득(우리나라의 기타소득에 해당)으로 구분하되, 예외적으로 직무발명에 대한 보수를 특허권 승계 시점에 한 번에 지급한 경우 양도소득으로 구분

1) 조희래 외 5인, 「미국, 일본 등의 직무발명(종업원 발명) 보상금에 대한 과세제도 현황 연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구용역, 2025.2.14., p.4

관련 입법동향

- 2016년 세법개정으로 근로기간 중 지급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구분이 기타 소득에서 근로소득으로 전환되고 비과세 한도가 축소되면서 연구자 등의 세부담이 증가하였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으며, 이에 소득 구분의 재조정 (근로소득 → 기타소득) 및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2대 국회에 총 4건 발의되어 있음
  - 기타소득으로 소득 구분 변경시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에서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으로 변경함으로써, 종합과세 대상 포함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배제함

[표 4] 직무발명보상금 과세 관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황, 제 22대 국회 기준

구분	대표발의자 (의안번호)	상세내용	세수효과 <sup>2)</sup> (연평균)
소득 구분 변경	안철수 (22133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기간 중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에서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sup>1)</sup>으로 변경(단, 비과세 한도는 현행 연 700만원 유지)</li> <li>• 퇴직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을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에서 무조건 분리과세로 변경(단, 비과세 한도는 현행 연 700만원 유지)</li> <li>*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선택적 분리과세, 3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li> </ul>	△48.1억원
비과세 한도 확대	황정아 (22140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기간 중 받은 직무발명보상금(근로소득 구분) 및 퇴직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기타소득 구분)의 비과세 한도액을 연간 700만원에서 전액으로 확대</li> </ul>	△154.4억원
소득 구분 변경 및 비과세 한도 확대	최수진 (22014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기간 중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에서 기타소득<sup>1)</sup>으로 구분하고, 비과세 한도를 연 700만원에서 전액으로 확대</li> <li>• 퇴직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를 연 700만원에서 전액으로 확대</li> </ul>	△149.7억원
	이해민 (22026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기간 중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에서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변경하고, 비과세 한도액을 연간 7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li> <li>• 퇴직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을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에서 무조건 분리과세로 변경하고, 비과세 한도액을 연간 7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li> </ul>	△92.6억원

주: 1) 해당 법안에 필요경비율에 대한 언급이 없어, 퇴직 후 지급되는 직무발명보상금에 적용되는 필요경비율 기준(0%)을 준용하여 세수효과 추계  
 2) 추계시 활용한 기준이 되는 국세통계 자료의 귀속연도가 추계서마다 달라 이에 따른 세수효과의 차이가 일부 있음  
 자료: 의안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직무발명보상금의 과세쟁점 및 시사점

- 근로기간 중 지급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해석에 따라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지, 양도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지에 등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상존
  - (근로소득) 소속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원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은 성과급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그 지급받는 대상 또는 특히 관련성 유무에 따라서 소득의 종류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입장<sup>2)</sup>
  - (양도소득) 직무발명보상금은 직무발명에 대한 법정보상제도에 따라 종업원 등이 특허권 등을 사용자에게 양도하고 받는 권리의 양도대가 또는 사용대가로, 근로소득으로 보기에는 부적합할 수 있다는 입장<sup>3)</sup>
  - (기타소득) 직무발명에 대한 대가로 원칙적으로 양도소득과 근로소득으로서의 성격이 혼재된 내용으로 양도 및 근로소득에 대한 대체·보완적 분류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입장<sup>4)</sup>

2) 감사원, 중부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 2011.10. p.93  
 3) 정지선, "소득세의 과세에 있어서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구분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제18권 제3집, 2018.9. p.32.  
 4) 정승영, "직무발명보상금의 과세 문제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제22권 제2호, 2016.8. p.165

- 참고로, 직무발명보상금과 유사한 소득인 발명특허와 같은 산업재산권<sup>5)</sup>의 양도 대가, 기술자문수당 및 기술이전보상금은 현행 「소득세법」 제21조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특허권 등을 근로기간 중 사용자에게 양도한 대가로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구분하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됨

▪ **현재 근로기간 중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구분되는 반면 퇴직 후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 및 이와 유사한 소득인 산업재산권의 양도 대가·기술자문수당·기술이전보상금 등은 기타소득으로 구분됨에 따라, 과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조세차익거래(tax arbitrage)의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특허권 등을 근로기간 중 사용자에게 양도한 대가로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세율 6~45%)으로 구분하고 연 700만원의 비과세 한도를 적용
- 반면,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율 20%)으로 구분하고 60%의 필요경비를 인정함에 따라, 소득 구분에 따라 세부담 차이가 발생

[표 5] 직무발명보상금 및 유사 소득의 현행과세 제도 비교, 2026년 기준

	직무발명보상금		직무발명보상금 유사 소득	
	근로기간 중 지급 직무발명보상금	퇴직 후 지급 직무발명보상금	산업재산권의 양도, 기술자문수당 등	기술이전보상금
소득구분	근로소득	기타소득	기타소득	기타소득
과세방식	종합과세	선택적 분리과세	선택적 분리과세	선택적 분리과세
경비공제	근로소득공제 (2~5%) <sup>1)</sup>	필요경비율 0%	필요경비율 60%	필요경비율 60%
세율	6~45%	20% <sup>2)</sup>	20% <sup>2)</sup>	20% <sup>2)</sup>
비과세한도	연 700만원	연 700만원	없음	없음

주: 1) 총급여 4,500만원~1억원 5%, 1억원 초과시 2%(단, 총급여 500만원 이하 70%, 500~1,500만원 40%, 1,500~4,500만원 15%)  
 2) 기타소득금액(비과세 및 필요경비 제외) 합계액이 3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율(6~45%)적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직무발명보상금은 연구자 등 종업원의 기술 혁신 활동에 대한 핵심적인 성과 보상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으므로, 향후 인센티브를 제고하고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직무발명보상금 과세제도의 합리적인 개편을 고려할 필요**

- R&D 연구에 대한 유인 강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해외사례 및 입법동향 등을 고려할 때, 현행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세제상의 불이익을 완화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을 고려할 필요
- 이 때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유사 소득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서 필요경비율<sup>6)</sup>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

5)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및 디자인권(발명진흥법 제2조 제4호)을 말하며, 직무발명 또한 특허·실용신안등록이나 디자인등록을 받았거나 그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바로 산업재산권에 해당함(백승기 외 6인, 2019)  
 6) 현행 세법에 따르면, 퇴직 후 직무발명보상금의 필요경비율은 0%인 반면, 산업재산권 등의 양도시 발생하는 소득(기타소득 구분)은 필요경비율이 60%임